등록금심의위원회 규정

- 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고등교육법 제11조에 따른 등록금심의위원회(이하 '위원회'라 한다)의 운영을 위하여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구성) ①위원회는 기획처장, 학생복지처장, 총무처장, 법인 추천 인사 1인, 학부 총학생회 추천 학생대표 2인, 대학원 학생 대표 1인, 총동문회장 추천 인사 1인 및 외부인사 1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기획처장으로 한다. <개정 2011.01.05., 2011.10.26., 개정 2015.12.23>
 - ②위원회의 명단은 홈페이지에 공개한다. <신설 2018.03.21.>

제3조(임기)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.

제4조(회의)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10분의 4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. <개정 2022.02.23.>

- ②위원장 유고시에는 총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④위원회의 주관부서는 기획처로 하며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.<개정 2015.12.23>
- ⑤회의 개최일 7일 이전(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)에 위원에게 개최일자, 장소와 함께 안건에 대한 주요사항을 통지하고, 회의 개최일 5일 이전(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)에 회의자료 송부를 원칙으로 한다. 개최 일정은 홈페이지에 공개한다.<신설 2018.03.21.> <개정 2022.02.23.>

제5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- 1. 등록금 산정에 관한 사항
- 2. 기타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
- 제6조(회의록) ①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출석위원 2인 이상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.
- ②회의록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홈페이지에 공개한다. <신설 2018.03.21.> 제7조(보고)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0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1년 1월 5일부터 변경 시행한다.

ᄇ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1년 10월 26일부터 변경 시행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변경 시행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8년 3월 21일부터 변경 시행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2월 23일부터 변경 시행한다.